

사전심의서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
결정내용	
신청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	[] 적합
	[] 부적합
	·
	·
	·
	·
	·

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건축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경관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• 그 밖의 사항	[] 신청 여부 [] 적합 [] 부적합 (사유 :)

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
이 사전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

유의사항	
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	•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, 심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 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.